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

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II. 검토의견

1. 농어촌유학의 정의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유학의 정의에 맞추어 정비 등 (안 제22조의2)

- 안 제22조의2는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 즉,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학구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 해당 규정의 경우 법률 체계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

먼저, 안 제22조의2제1항은 ‘농어촌유학’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일반적인 ‘농어촌유학’의 정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게 이 법에 따른 ‘농어촌유학’의 정의를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안 제22조의2제1항에서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의2제3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시나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로 규정함.

<안 제22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 또는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교육활동과 농어촌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정한다)은 <u>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u> 로 정할 수 있다.	정한다)은 <u>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u> 로 정할 수 있다.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마련 필요

- 현행법 제24조제3항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4조제3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외에 공유지 우선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만을 두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와 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안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례 신설>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 부칙
<신설>	제2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 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2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우선 매각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유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띄어쓰기를 교정하고, 개정규정의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등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